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확인 안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품질혁신본부입니다.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모니터링을 위하여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2022년 10월 31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법 조항을 확인하여 자체점검보고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수	2022년 평가제 11기
발생기간	2019년 11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확인서류 :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통보 공문, 판결문 등

기준일 : 행정처분 통지 공문의 시행일자, 판결일자 등

<행정처분 시행일자 예시>

주무관	보육담당	보육과장	0000.0.0.
협조자			
시행 보육과-10000	0000년 0월 0일	접수	
우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파로 345	/	https://www.kcpi.or.kr/
전화번호 1661-5666	팩스번호 02-6901-0151	/	/ 비공개

해당내용

항목	관련기준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항목	관련기준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원장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금고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포함)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작성방법

- 자체점검보고서의 ‘어린이집 정보’ [다음]을 누르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확인’ 사항 작성 가능
- 어린이집의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 해당항목 확인 후, 발생기간 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함**
 - ※ ‘있음’에 체크한 경우, 진흥원에서 기본사항과 교차확인 함
 - ※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은 **대표자 변경 및 보육교직원 면직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
- 선정통보 직전월 말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됨**

□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화면

작성시간 [29 : 52] 연장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확인

○ 해당 어린이집에서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일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발생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 여부를 체크하고, 발생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이력 : 있음 없음

항 목	관련기준	확인결과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과징금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같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같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원장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input type="checkbox"/>
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input type="checkbox"/>
원장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input type="checkbox"/>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고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등급조정 사유 발생		N

* 확정통보일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자하위 등급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장명 : ;

이전 다음

□ 문의전화 : 1661-5666